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



**하 동 군**  
**[기획예산과]**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사업기획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집행의 공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 I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II 추진방향

- 예산 소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과적 재원 배분 실현
- 재정분권과 함께 재정운영 소 과정에 주민의 자율통제와 제안·협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III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

사업제안	타당성 검토	예산기구 심사	예산안 편성	예산안 통지	예산안 심의	사업시행
전 군민	소관부서	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소관부서	예산담당부서	군의회	전 부서
주민참여예산 읍면신청	법령·조례,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	사업심의 우선순위 및 사업 선정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산안 편성	읍면 지역회의 개최 (예산안반영 결과공유)	군의회 예산안 심의	주민참여 예산사업 적극 추진
(~6.28)	7~8월	9월	10월	11월	11~12월	2025년

## IV

# 세부추진계획

## 1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위 원 수 : 20인 이내(당연직 4명, 위촉직 16명이내)
- 임 기 : 2년(한차례 연임가능)
-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 기 능
  -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촉위원
  - 성별,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 위촉 \* 특정성별이 10분의 6초과 금지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 읍면별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 (기능)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등
  - (구성)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 해당 읍·면장이 위촉(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금지)
- ※ 읍·면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 가능

## 2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추진

□ 공모규모 : 55억원(재정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구 분	규모	사업내용	참여방법
주민 자치형	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과 지역 특성(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품 활용 등)에 맞는 사업</li> <li>마을안길 도로 및 농로, 배수로, 마을 주차장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li> <li>읍면 지역회의 주도로 읍·면별 한도 내에서 발굴 및 사업 결정(우선순위)</li> </ul>	읍·면 지역회의 추천
생활 안전형	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불편해소 및 재해재난대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소액사업(5백만원 이하)</li> <li>읍면장에게 즉시 제안→소관부서 건의→읍·면 재배정</li> </ul>	읍·면 제안

### ○ 주민자치형 읍·면 배분기준

(2024. 4.기준, 단위 : 개, 명, km<sup>2</sup>, 백만원)

읍면	마을수			인구수			면적			계	지원 예산
	개수	비율	배점	인구	비율	배점	면적	비율	배점		
계	319	100	40	41,300	100	30	675.3	100	30	100	<b>5,000</b>
하동읍	35	10.97	4.39	9,382	22.72	6.82	29.57	4.38	1.31	12.52	<b>626</b>
화개면	20	6.27	2.51	2,841	6.88	2.06	133.94	19.83	5.95	10.52	<b>526</b>
악양면	30	9.40	3.76	3,334	8.07	2.42	52.52	7.78	2.33	8.52	<b>426</b>
적량면	26	8.15	3.26	1,828	4.43	1.33	41.68	6.17	1.85	6.44	<b>322</b>
횡천면	18	5.64	2.26	1,789	4.33	1.30	34.48	5.11	1.53	5.09	<b>254</b>
고전면	27	8.46	3.39	1,997	4.84	1.45	36.20	5.36	1.61	6.44	<b>322</b>
금남면	22	6.90	2.76	3,233	7.83	2.35	43.43	6.43	1.93	7.04	<b>352</b>
금성면	15	4.70	1.88	2,756	6.67	2.00	22.73	7.43	2.23	6.11	<b>306</b>
진교면	33	10.34	4.14	5,587	13.53	4.06	50.18	5.10	1.53	9.72	<b>486</b>
양보면	28	8.78	3.51	1,609	3.90	1.17	34.41	4.88	1.46	6.14	<b>307</b>
북천면	16	5.02	2.01	1,566	3.79	1.14	32.94	11.17	3.35	6.49	<b>325</b>
청암면	13	4.08	1.63	1,330	3.22	0.97	75.40	13.00	3.90	6.50	<b>325</b>
옥종면	36	11.29	4.51	4,048	9.80	2.94	87.82	3.37	1.01	8.46	<b>423</b>

## □ 주민자치형 추진체계

- 사업제안 : 지역회의(읍면) 사업발굴 → 사업선정(우선순위)
- 사업규모
  - 읍면별 예산한도 내에서 건당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5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발굴 선정
- 대상사업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 지역의 특성(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품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 마을안길, 도로 및 농로, 배수로, 마을 주차장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등

### 부 적 격 사 업

- ▷ 정책 결정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한 시설투자사업, 대규모 계속 사업
  -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시설물 건립, CCTV 설치 등
- ▷ 법률(특히, 선거법) 및 조례 등 위반사항
- ▷ 공익보다는 일부 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 공연, 축제 행사 등 일회성 사업
- ▷ 일반 민원성 제안
  - 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즉시 추진 사업 등
- ▷ 타 공공기관에서 이행할 사업
  -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전력공사, 통신사 등
- ▷ 사업비 증액요구사업, 다년도 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등
- ▷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업 또는 자산취득성 사업
- ▷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 등

- 선정기준 : 마을별로 형평성, 집행의 신속성\*, 사업의 수혜도, 사업의 효과성, 주민의 수용성, 민원의 숙원성

\*2025년도 상반기 중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

- ※ 타당성 검토 기준 : 산출내역, 선정기준 적정성, 부적격사업 여부 등

○ 처리절차

사업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타당성 검토	사업 선정 및 승인	주민참여 예산안 검토 및 결과 통보	읍면별 예산안 반영결과 공유	예산안 심의	사업시행
5~8월	7~8월까지	9월	9~10월	11월	11월~12월	2025년
사업접수 (읍면 지역회의)	실행가능성, 적격여부 등 (소관부서, 읍면 등)	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예산담당 부서	읍면 지역회의 개최	군의회	전부서 (공개입찰)

구분	추진내용	시기
읍면지역회의	마을별 제안된 사업 접수 및 예산 한도내 우선순위 결정	2024. 6.
↓		
소관부서	현지조사 등 타당성검토기준 적정성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2024. 7.
↓		
읍면지역회의	소관부서 검토의견 참고하여 사업선정(우선순위)	2024. 7. ~ 8.
↓		
예산담당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2024. 9.
↓		
소관부서	주민참여예산 세출예산편성요구	2024. 9. ~ 10.
↓		
예산부서	주민참여예산 세출예산편성(안) 마련 및 지역회의 통보	2024. 11.
↓		
읍면지역회의	읍면별 지역회의 개최 주민참여예산(안)반영 결과 공유	2024. 11.
↓		
군의회	세출예산(안) 심의·확정	2024. 11.~12.
↓		
소관부서	2025년도 사업시행	2025. 1. ~ 6.
↓		
재정관리과	주민참여예산 10백만원이상 공개입찰	2025. 1. ~ 3.

### 3

## 홍보인프라 강화

### □ 예산 전과정 정보공개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예산기구 운영 정보 적극 공개
- 참여사업 선정, 추진상황 및 재정정보 등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선정 및 예산집행현황 등 공개

###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홈페이지 활용(<http://www.hadong.go.kr>)
  - ⇒ 군민과 함께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 운영내용 : 예산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절감, 수입증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접수

### □ 주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강화

- 홈페이지 활용(<http://www.hadong.go.kr>)
  -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주민참여예산
-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 언론보도
-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배포(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

## V

## 향후계획(안)

- 「2025년도 예산편성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통보 : 2024. 5.
- 주민자치형 사업 우선순위 선정 제출(읍·면 ⇒ 군: 예산 및 소관부서) : 2024. 7.
- 주민자치형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선정 : 2024. 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24. 9.
-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확정 : 2024.10~12.
- 사업 시행 : 2025. 1.

## VI 행정(협조)사항

구분	협조사항
전 부서 및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 참여</li> <li>○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공모사업 참여(홍보) 협조</li> <li>○ 주민참여예산제 부서 담당자 지정 운영</li> <li>○ 군민 공모사업 검토 협조(법률위배·중복여부 검토, 사업비 재산정, 구체화, 우선순위 등)</li> <li>○ 단체(기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협조</li> </ul>
기획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제공</li> <li>- 홈페이지(배너 등) 활용 홍보</li> <li>-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배포</li> </ul> </li> </ul>
재정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예산제 발굴사업 공개입찰 실시(10백만원 이상)</li> </ul>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안전형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민생활 불편사항 → 읍면 제안 → 소관부서 건의 → 읍면 재배정</li> </ul> </li> <li>○ 읍면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적극 지원</li> </ul>

붙임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각 1부. 끝.



**주민자치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 개인정보는 제안사업 신청 관련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음

신 청 읍 면				
지역회의 대표	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읍·면)장	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등)	
사 업 위 치	
소 요 예 산	백만 원
산 출 근 거	예시) ○ 재료구입 : ○외 종 × ○,○○○원 =            천원 ○ ○
사 업 기 간	2025. 월. ~ 2025. 월.
사 업 내 용 (구 체 적 추진방법 등)	

<p>사 업 내 용 (구 체 적 추진방법 등</p>	
<p>기 대 효 과</p>	
<p>기 타 (사진 등 설명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하동군수 귀하</p>	

#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같음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읍·면 단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읍·면 단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한 수집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5년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읍면단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참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같음

제공받는 자	하동군,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참여예산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

##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읍·면 단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동의란 서명 등으로 같음함

**붙임2** ( )읍면 지역회의 구성원 명단(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동의는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내용 참조

연번	성명	성별	출생연도	연락처	소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서명	서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소속 : 주민자치위원, 이반장 등 기재

## 사 업 명

제안사업 구체화

분야	산업경제/ 도시안전/ 건설교통/ 문화관광/ 환경산림/ 복지행정/ 농·축·어업/ 기타 중 택			
사업명(제목)				
제안내용요약	신청한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비고
	사업부서에서 조정 한 사업비로 입력 ※ 예산한도 : 5,000천원~50,000천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세부내역	구체화 단계에서 추가된 항목으로 조정된 사업비 범위 내 세부산출내역 작성			
추진계획	구체화 단계에서 추가된 항목으로 내년도 추진계획 작성			
사업효과 (기대효과)				

## □ 사업부서 검토의견

검토결과	법령위배 여부		중복사업 여부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사업비 조정 (천원)	당초 : , 조정 : 사업비 조정 시 당초, 조정금액 입력 / 미조정시 동일한 금액을 두 곳에 입력			
판단사유 (검토의견)	법령위배 여부, 중복사업 여부 등에 해당되는 판단 사유 입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사유 입력			
검토의견 요약	판단사유를 요약하여 입력(수용, 수용곤란, 자체사업추진, 장기검토 등)			
검토부서	0000과 00담당	검토자 연락처	000-0000 형식으로 입력	
검토자	홍00	부서장 확인	김00	

※ 제안사업 구체화 : 주민이 제안한 취지를 바탕으로 제안사업 내용을 다듬고 구체화하는 등 수정·보완하여 실행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

※ 법령위배 여부, 중복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법령위배·중복여부에 해당되는지는 부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되므로 모든 제안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의 구체화 작성 필수

※ 부적격 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배 사업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국도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 주민자치형 사업 평가표(안)

항 목	평가지표	평가 점수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100	80	60	40	20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타당성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효과성	사업추진 시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가 적절한 규모입니까?					
수혜대상	이 사업은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합 계		점				

○ 평가자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심의 시 자율적 변경 사용 가능

사업명 :

위치 :

사업의 필요성(현안·불편 사항) 또는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

※ 기타 참고사항

- 사업량 :

- 추정사업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도, 약도로 정확한 위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요망  
※필요시 현장상태를 식별할 수있는 사진 첨부

의견서 제출자

○ 주소 :

○ 성명 : (전화번호)

00 읍면장 귀하